

고 성 군 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(의안번호 제57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나 신고의무 및 토지의 지목·면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 및 멸실 되었을 때 등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에 각각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세무부서 신고를 폐지하고,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등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도 세무부서 신고를 생략하도록 함.
(안 제32조 및 안 제7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건축 및 토지 등의 변경 시 건축 부서와 세무 부서를 민원이 직접 신고하던 사항을 세무 부서의 신고의무 사항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
-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세무부서 신고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세무관계 업무는 차질이 없는지
- 답 : 건축부서 신고 관련 자료통보에 의거 업무처리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